

## 국고보조사업 집행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지원배제 등 「2026년 예산 집행지침」통보

- 예산절감액 사용 범위 확대 등 집행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 배제 등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 출자금·사업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절차 구체화 등 재정집행 책임성·효과성 강화

기획예산처는 1월 5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이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및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대 >

먼저,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②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항)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하였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당직 제도개편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원칙적 불용, 'AI당직민원시스템도입' 등 당직 개편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적 사용 가능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수입 발생시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 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과 지출 관리를 강화하였다.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4-214-2350)
	예산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권민상 (roba97@korea.kr)
	예산실	책임자	과 장	진민규 (044-214-2370)
	기금운용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희 (leet88@korea.kr)



□ **지자체 자율성 확대**

'25년 지침	'26년 지침 개정안
<p>(14) 예산절감액 및 <u>50만원</u>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u>부문</u>내 사업 사용</p>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u>에 의하여</u> 예산을 절감한 경우*<u>와</u> 사용잔액이 <u>50만원</u>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u>반환하지 않고</u>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u>동일부문</u>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 <u>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u></p> <p>-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설</u>)</p> <p>- (중략)</p> <p>-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u>신규사업</u>,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p>	<p>(14) 예산절감액 및 <u>500만원</u>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u>분야</u>내 사업 사용</p>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u>으로</u> 예산을 절감한 경우* <u>또는</u> 사용잔액이 <u>500만원</u>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u>반환하지 않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 분야 내 사업 중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또는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u></p> <p>* <u>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예시</u> &lt;예시표&gt;</p> <p>-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u>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p> <p>- (중략)</p> <p>-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u>신규사업*</u>,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p> <p>* <u>단,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은 잔액 사용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u></p>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예시 (신설)**

<p>①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사업 등에서 시공방법을 전환하여 민원 최소화 및 보강 비용 등 공사비 절감</li> <li>- 신규 설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li> </ul> <p>②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시설의 설비를 재사용하여 구매비용 등 절감</li> <li>- 공정 계획 재검토를 통해 기존의 공정 방식,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공사비 등 절감 등</li> </ul> <p>③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행적으로 도입하던 공간을 축소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li> </ul>
--

'25년 지침	'26년 지침 개정안
<p><b>&lt;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gt;</b></p> <p>(1) 보조금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신설)</u></li> </ul>	<p>(1) 보조금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각 중앙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43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u></li> </ul>
<p><b>&lt;저연차 직원 보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신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거리 근무지파견 및 발령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전비, 관사배정 등) 집행시 저연차 직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li> </ul>
<p><b>&lt;당직예산 효율화&gt;</b></p> <p><u>다. (신설)</u></p>	<p><u>다. 국가 공무원 당직 개편에 따른 일·숙직비 절감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이·전용 등 금지) 다만, 당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p> <p>*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등</p>
<p><b>&lt;퇴직급여 총당금 상향&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총당금 부족기관은 결산잉여금의 <u>70%이상</u>을 퇴직급여총당금에 적립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총당금 부족기관은 결산잉여금의 <u>80%이상</u>을 퇴직급여총당금에 적립한다.</li> </ul>
<p><b>&lt;출자금 처리방안 구체화&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신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출자사업 목적 달성 및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정부가 출자한 예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집행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u></li> </ul>
<p><b>&lt;사업출연금 처리방안 구체화&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u>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u>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u>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u> <u>기획예산처장관과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u> 또한,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li> </ul>
<p><b>&lt;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관리 강화&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u>직접 연계된 초과지출</u>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u>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초과지출</u>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li> </ul>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 '83년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마련·통보한 이래 매년 작성·통보 중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